

# 체 육 시 설 관 리 규 정

제정 1989. 3. 1      개정 1994. 12. 22      개정 2018.10.30  
개정 1989. 5. 29      개정 1995. 5. 19  
개정 1990. 9. 17      개정 1999. 3. 4  
개정 1992. 3. 1      개정 2001. 6. 1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내 전 체육시설에 적용한다.

제3조(운영방침) ① 체육시설은 본 대학의 체육교육 및 교직원의 체력향상을 위해 운영한다.

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③ 체육시설의 이용시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 체육시설은 제1항에 지장이 없는 한 외부인(단체)에 대한 대여 및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.

제4조(운영조직) 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관장은 직제규정에 따른다.

②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관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운영에 관한 사항 : 운영부서

- 체육관 운영계획의 수립
- 시설 및 기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사용시간 배정 및 대여에 관한 사항
-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시설의 보수에 관한 사항 : 시설관리부서

제5조(관장) 총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으며, 관장은 체육담당 교원으로 보한다.

1. 체력측정실 운영
2. 체육수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
3. 기타 학생 체육에 관한 사항

제6조(관리책임) ① 체육시설은 운영부서에서 관리 한다.

- ② 운영 부서의 장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를 두며 제반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③ 시설관리 부서장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등 관리운영에 적극 협조한다.
- ④ 개인 또는 단체이용시 과실로 인한 시설의 파손 및 기구의 손망실시 해당자(단체)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체육시설 운영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
2. 기타 관리운영상 인정되는 지침사안 협의

제9조(이용) ① 체육시설은 본 대학의 체육수업,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활동, 각종행사를 우선으로 한다.

- ② 외부인(단체)의 사용은 제1항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.

제10조(이용방법)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설별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한다. (개정: 2018.10.30)

- ② 외부인(단체 포함)이 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.(개정: 2018.10.30)
- ③ 체육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(내·외부 포함)는 체육시설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며 미납시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한다.(개정: 2018.10.30)
- ④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한다.(개정: 2018.10.30)

제11조(이용시간) 시설별 이용시간은 체육시설 이용 시간표(별표 1)에 의한다.

제12조(이용자복장) 체육목적에 위한 동시설의 이용은 운동복(화)장 이어야 하며 체육목적 외 이용시는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복장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내부시설 이용) 종목별 체육시설 및 내부 부속시설의 이용은 별도의 계획에 의거

운용한다.

제14조(회원제) 외부인의 체육시설 사용을 위하여 회원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5조 삭제 (개정: 2018.10..30)

제16조 삭제 (개정: 2018.10..30)

제17조 삭제 (개정: 2018.10..30)

제18조(안전관리) ①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(단체)에게 있다.

② 이용자(단체)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보칙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: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경과조치: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(별표 1)

## 체육시설 이용 시간표

구 분	시 간	이 용 종 목
실내 체육관	○ 학생,교직원,회원 : 06:00~24:00 ○ 외부행사 : 09:00~17:00	농구/배구장(1면) 배드민턴장(6면) 탁구장(12대) 라켓볼장(4면) 조깅트랙 체력단련실 등 * 관람석: 3,854석
테니스장	○ A,B,C 코트 : 일조시간~24:00 ○ D,E 코트 : 일조시간~22:00	테니스 코트(5면)
대운동장	일조시간~22:00까지	축구장(1면) 농구장(1면) 배구장(1면)
풋살구장	일조시간~24:00까지	풋살 코트(2면)

(별지 제1호 서식)

<b>체육시설 사용 신청서</b> (☎:279-3881,9146~9147 FAX 279-3882, 2099)							담당	팀장	처장
행사명									
사용기간 (일)	20년 월 일 요일 20년 월 일 요일 ( : 시 부터 : 시 까지)	이용료	무료, 유료( 원)						
사용시설 (해당란에○표)	체 육 관					테니스장	운동장		
	주경기장	탁구장	라켓볼	투기장	태극권실	배드민턴	5면	대운동장	풋살구장
						A. B. C. D. E. F	A B C D E	A	B
경기종목 (상세히 기록)							사용인원		
							명		
사용(단체)	단체명					소속			
지도교수	성명	①				전화			
특기사항	위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오며, 또한 시설물 파손 및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.								
	①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후 이용		② 입장정원 외 이용금지 및 이용시간 준수		③ 차량 주차장내 주차(도로변 불법주차 금지)		④ 체육시설 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금연		
	⑤ 체육시설 내에서 일체의 취사행위 금지		⑥ 마이크 사용 등 소음 발생 기구 사용금지		⑦ 이용 후 쓰레기 수거 및 반출		⑧ 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		
※ 본 신청서를 체육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입금계좌 및 예금주: 우리은행 1005-501-131020 포항공과대학교), (신용카드는 총무안전팀, 체육관 사무실에서 결재 후 영수증 제출)									

----- 질 취 선 -----

내·외부(단체) 체육시설 이용허가서 및 영수증				
팩스번호			이용단체	
신청자	연락처		참가인원	명
이용목적			경기장 구분	
			경기 종목	
이용일시	년 월 일 요일( : ~ : )	이용료		

위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오니, 이용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,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경기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조건임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후 이용        | ② 입장정원 외 이용금지 및 이용시간 준수  |
| ③ 차량 주차장내 주차(도로변 불법주차 금지) | ④ 체육시설 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금연   |
| ⑤ 체육시설 내에서 일체의 취사행위 금지    | ⑥ 마이크 사용 등 소음 발생 기구 사용금지 |
| ⑦ 이용 후 쓰레기 수거 및 반출        | ⑧ 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    |

20 년 월 일  
포 항공 과 대 학 교